

-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및 직업성 암 -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박 정 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법률 제4826호) 4조 1항에 의하면 ‘업무상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로 규정되어 있다. 질병을 포함한 재해가 업무상 사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며 더욱이 국가의 사회적·경제적 여건에 따라 시대적으로 업무관련성의 범위나 인정기준 등 개념이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산업보건관련 분야 종사자들은 관심을 갖고 항상 그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란에서는 관련된 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및 직업성 암 등과 관련된 업무상 재해 인정에 관한 최근의 법원 판례를 몇 차례에 걸쳐 소개하고자 한다.

뇌혈관질환⑤

과로사(뇌간출혈)

- 산재심사위원회 1994. 1. 24. 심사결정 제152호 결정서
- 대법관
- 원심판결

- 참조조문 산재법 제3조, 업무상재해인정기준 제12조 2항
- 참조판례 대법원 1992. 2. 25. 선고, 91누8586판결

판결요지

목욕중 사망하였다 하더라도 과로가 고혈압을 악화시켜 뇌간출혈을 유발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한다.

❖판결이유

1. 청구이유

청구인 ○○○(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은 사망근로자 ○○○(이하 “피재자”라 한다)의 유족(처)의 대리인으로서 서울서부지방노동사무소장(이하 “원처분청”이라 한다)이 93. 12. 12 동유족

에게 행한 유족급여 등 부지급 처분은 부당하니 이를 취소하고 동유족급여 등을 지급하라는 취지이다.

2. 청구이유

동피재자는 건강진단표상 혈압 160~110의 고혈압 소지자로서 만 49세의 종교신문 편집국장으



에 따른 책임감을 부여받았고, 이러한 제반 심신의 피곤함을 입사동기인 총무국장 ○○○이하 후배사원들에게 수차례 호소하여 오다가 심신의 과로와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병, 사망하였다 할 것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및 업무상재해인정기준 제12조(뇌혈관질환 및 심장질환) 제2항 제1호 나목 ‘통상의 소정 업무 내용과 비교하여 근로자의 심신상태를 급격히 악화시킬 수 있는 정도로 특별히 과중한 정신적·육체적 부하를 받을 수 있는 업무를 상당 기간 동안 계속 수행해 왔을 때’에 의거하여 업무상 사유에 의한 재해라는 주장인데 반하여 원처분청은 동피재자의 재해는 첫째, 근무장소를 이탈하여 목욕탕에서 휴식중 발생한 재해이고, 둘째, 재해이전의 근무현황을 살펴 보면 심신상태를 급격히 악화시킬 수 있는 정도로 특별히 과중한 업무를 상당기간 계속 수행한 근거가 없으므로 업무상 사유에 기인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의학적 및 객관적 근거가 미흡하므로 업무상 재해인정기준 제12조 제2항에 의거 업무의 재해로 결정, 처분한 것은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따라서 이건 해결의 관건은 업무상 재해여부에 있다고 보고 살피건대 동피재자는 93. 10. 21. 09:00 출근하여 오전에 편집회의를 하고, 점심식사 후 불교진흥원과 업무협의 후 귀사하여 업무수행중, 다음날 충북 단양 구인사 취재차 출장을 가도록 되어 있는데, 오후 3시경 몹시 피곤하다고하여 총무국장 ○○○이 여직원 ○○○을 시켜 15,000원을 주도록 하였고, 동피재자에게 목욕이나 하라고 권유하여 동피재자는 인근 우성탕에서 목욕 후 사망하는 재해가 발생하였다는 것이다 (원처분청 의견).

따라서 그 업무와 관련하여 업무상 재해를 규명하기 위해 동피재자의 근무상황과 건강상태를 확인한 결과 1) 근무상황은 88. 5. 13. 범보신문(불국사)에 입사하여 편집책임자(국장 직원 4명)

로 근무시간은 09시에 출근하여 20시경 퇴근하였으며 동직원에게 취재 지시, 외부인사를 선정하여 원고수집, 편집업무, 기자관리 등 동피재자가 직접취재 업무 등을 하였으며 재해직전에는 신문제작 관제로 이틀간 연속 밤11시까지 야간근무를 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2) 건강상태는 93. 6. 5. 실시한 건강진단개인표상 혈압이 160/110으로 고혈압 증세 및 순환기 질환 의심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이상의 1) 근무상황과 2) 건강상태에서 그 업무와 관련성 인과관계에 대하여 당 자문의에게 자문한 결과 그 소견은 다음과 같다.

3) “동피재자는 발병전날 밤 11:00까지 늦도록 근무를 하였고 발병일 피로감을 느껴 목욕중 뇌간출혈로 사망한 것으로 보아 과로에 의해 증상이 발병한 것으로 추정됨”이라는 소견이다. 또한 동피재자가 1)과 같은 근무상황하에서 재해전일 연장근로나 야간근무를 하는 경우 2)와 같은 건강상태(고혈압)에서는 건강한 사람보다 과로나 피로가 쉽게 올 수 있고 그 과로는 인체의 저항기능이 저하되어 기존증을 악화시키거나 다른 새로운 질병을 유발시킬 가능성이 높고 걸릴 수 있음을 일반 경험에서 흔히 볼 수 있다.

따라서 그 업무와 관련 사망사이에 상당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동피재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되어야 하므로 동피재자는 1)과 같은 근무를 하여 2)와 같은 건강상태에서 과로나 피로가 쉽게 올 수 있고 3)과 같은 당부자문의 소견과 같이 사망의 원인이 된 뇌간출혈은 과로로 인해 유발될 수 있다는 소견으로 보아 그 업무와 관련 사망간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본건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봄이 타당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상의 견해와 달리한 원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에 주문과 같이 같이 결정한다.